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74호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산업건설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Ims1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조의2(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① 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2. 해당 도로의 관리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 조명시설

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점자블록

②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